





2025년도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신청요강

2025. 2.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국 연 구 재 단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① 2025년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연구소장) 신청 기간	<u>2025. 4. 15.(화) 09:00 ~ 2025. 4. 28.(월) 18:00</u> ※ 신청마감일 : 2025. 4. 28.(월)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5. 4. 15.(화) 09:00 ~ 2025. 4. 30.(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5.4.28.)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
- ② 기존 한국연구재단의 e-R&D 시스템을 대체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을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 ③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연구책임자 접수기간 시작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2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④ 선정평가 시, 『연구자 연구활동 분석 시스템』도입
- 연구자 연구활동 분석 시스템 적용에 따라, 신청 연구책임자의 정보*를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연구 책임자의 업적정보 등록과 이미 입력한 정보의 최신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 논문 연간 피인용 수 추이, 학술지 논문 수 추이, 연구과제 수행 정보, 특허등록 실적
 - * 연구활동분석에 포함되는 업적정보
 - ① 논문실적: 국제전문학술지(SCI급) 및 국내전문학술지(KCI급), ② 지식재산: 등록 특허
- 국가연구소(NRL2.0) 과제 신청은 IRIS에서 연구자 접수 마감일인 2025. 4. 28.(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고, 연구활동분석에 활용되는 업적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2025. 4. 30.(수)(23:59:59)까지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5. 4. 30.(수) 후로도 업적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나,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정보는 2025. 4. 30.(수)까지 입력된 자료로 제공 예정
- 연구활동분석 정보는 소속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 정보(KR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업적정보 등록 및 업데이트 방법은 소속기관에 따라 상이합니다.
 - [1] 평가에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연구활동분석 정보 확인 방법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 <u>www.kri.go.kr</u>)"에 접속하여 로그인 > 좌측 메뉴에서 [연구활동분석] 클릭 > 화면 상단 [평가자에게 제공되는 화면 보기] 버튼 클릭

[2] 소속기관 유형에 따른 업적정보 등록 방법

기관 유형별 KRI* 논문·특허 정보 신규 등록(수정, 삭제) 절차

1. 소속 기관별 KRI 연계 유형 및 유형 확인 방법

구분	정의	KRI에서 확인하는 법	예시기관
유형1	대학의 연구	KRI 좌측 메뉴 > 협정체결기관현황 메뉴	가야대학교,
(대학 연구업적시스템	업적시스템을 KRI와	접속 후 기관명 옆에 🌣 과 😕 표시가	가천대학교,
-KRI 연계 기관)	연계하는 기관	모두 있는 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 등
유형2	재단이 제공하는	KRI 좌측 메뉴 > 협정체결기관현황 메뉴	가 <u>톨</u> 릭꽃동네대학교,
	KRIMS를 사용하여		가톨릭상지대학교,
(KRIMS 사용 기관)	업적을 관리하는 기관	접속 후 기관명 옆에 ☑ 표시만 있는 기관	강동대학교 등
유형3 (KRI 직접 입력 기관)	연구자가 직접 KRI에 업적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관	KRI 좌측 메뉴 > 협정체결기관현황 메뉴 접속 후 기관명 옆에 아무 표시가 없는 기관 또는 협정체결기관현황 목록에 없는 기관	ICT폴리텍대학, 거제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 2. 소속 기관별 논문·특허 정보 신규 등록(수정, 삭제) 절차
- 유형1(대학 연구업적시스템-KRI 연계 기관)



업데이트

○ 유형3(KRI 직접 입력 기관)

등록・수정



- 3. 유형1(대학 연구업적시스템-KRI 연계 기관) 유의사항
- 신청자 소속기관이 유형1(기관 자체 연구업적시스템 연계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u>직접</u>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 대학의 업적관리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KRI로 연계 필요

반영

- 대학의 연구업적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의 KRI 반영에 최소 10분~최대 24시간(기관별로 상이)이 걸리므로, 기관별 소요 시간을 확인하여 업적정보가 2025. 4. 30.(수)(23:59:59)까지 한국연구재단 "한국 연구자정보(KRI)"에 반영되도록 미리 대학 연구업적시스템 업데이트 필요
- * 한국연구자정보(KRI) 정보등록 및 연구활동분석 관련 문의처 ☎ 042-869-7744
- * 상세 내용은 FAQ(신청요강 p29~39) 및 [붙임 5] 연구활동분석 소개 자료(신청요강 p48) 참조

목 차

│. 2025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2. 신규 연구소 지원 내용	
3. 2025년 추진 일정	2
Ⅱ. 신규과제 신청	
 1. 신청 및 참여자격 ······	3
2. 신청 및 참여제한 사항	
3.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4.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5. 신청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6.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11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	. 12
2. 평가 절차 및 방법 ··································	
3. 평가 항목	
4. 차별성 검토	· 15
IV.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1.0
1. 연구개발비 지급 ···································	
2. 연구개월이 사용 및 전디 ··································	
※ 국세ㅇㅇ근ㅣ게글미 시ㅇ기正 ᄎ ㅠㅋ시ㅎ	10
∀. 향후 관리사항	
1. 연차보고서, 단계 및 최종평가 등	· 19
2. 성과 관리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22
VI . 기타 사항	. 22
	23
붙임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27
2. 국가연구소(NRL2.0) FAQ ······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4.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분야	
5. 한국연구재단 연구활동분석 소개	
6.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입력정보 예시	. 50

I 2025년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내용

- □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연구소 육성
- □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활용, 자립화 등을 패키지 형태의 블록펀딩 방식 지원

2 신규 연구소 지원 내용

- □ (지원대상)「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학기술원법」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제외(단, 국립대학법인은 지원 대상 포함)) 소속의 KCI 등록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 * (신청) 대학별 3개 연구소 이내, (선정) 대학별 1개 연구소 이내
- □ (선정규모) 총 4개 내외
- □ (지원분야)
 - 대학에서 강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과학적 난제, 미래
 가치가 있는 분야 등의 연구 주제 설정
- □ (지원규모) 10년(3+4+3)

7	· 분	내 용	
선정 인	선정 연구소 수 총 4개 내외 (자유공모)		
	1단계 (1~3년차)	2025. 9. 1. ~ 2028. 2. 29. (총 30개월)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5. 9. 1. ~ 2026. 2. 28. (총 6개월)	
연구기간 2단계 (3+4+3) (4~7년차)		2028. 3. 1. ~ 2032. 2. 29. (총 48개월)	
	3단계 (8~10년차)	2032. 3. 1. ~ 2035. 2. 28. (총 36개월)	
연구개발비		연 100억 원 이내 (간접비 포함) ※ 연구소의 신청 예산 및 선정·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 3단계 연구비 차등 배분 및 계속 지원 여부 결정

3 2025년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25. 4. 15.(화) ~ 2025. 4. 28.(월)	대학부설연구소 신청기간
2025. 4. 15.(화) ~ 2025. 4. 30.(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5. 5월 중	1차 예비평가 실시
2025. 6월 초 ~ 6월 중	2차 본평가 대상과제 통보
2025. 6월 말 ~ 8월 중	2차 본평가 실시
2025. 8월 말	국가연구소(NRL2.0)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2025. 9월 1일	신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신규과제 신청

★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책임자, 연구원의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사전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1 신청 및 참여 자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o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과학기술원법」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제외(단, 국립대학법인은 지원 대상 포함))
 - * 신청 수는 대학별 3개 이내, 선정 수는 대학별 1개 이내
 - * 최종 선정권 내 동일 대학 중복 시, 차순위 타 대학 선정

② 연구소 요건

구분	자격요건	규모
대학부설 연구소	KCI 등록* ※ 사업 선정 시 KCI 등록 필수	4개 내외 연구소 ※ (신청)대학별 3개 이내, (선정)대학별 1개 이내

- * 선정 후에는 한국연구재단 KCI(https://www.kci.go.kr) 누리집 대학부설연구소 등록 필수
 - ㅇ 旣등록 연구소의 경우 제출 일까지 해당 연구소 정보 업데이트 필요
 - 이 기존 연구소 재편 또는 신규 연구소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ㅇ 교육부 집단연구사업* 과제에 既참여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연구소는 신규 신청 불가
 - *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내 인프라 고도화 유형, Core 등은 신청 가능

③ 연구진 구성

- ㅇ 연구진은 연구책임자(연구소장),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구성
 - * 본 사업의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를 의미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참여연구자에 해당
- 연구진 구성 및 규모는 자율 구성 가능
- 연구진의 보다 자유로운 연구그룹 구성 및 진·출입 허용
- 필요시 연구 개시 후 공동연구원 변경을 허용하고, 연구소장의 경우 단계평가 시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교체 허용

2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신청 및 참여 제한】

구분	공통 자격 요건
연구책임자 (연구소장)	①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수행 가능(2책 5공)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5.9.1.)로부터 10개월 이내(2026.6.30.)에 최종 종료(연차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② 2025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소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하였던 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가능 ※ 단, 연구책임자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국가연구소(NRL2.0) > 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신청예정인 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불가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	① 2025년 상반기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시업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 및 신청예정인 공동연구원은 중복 신청 가능 ② 국가연구소(NRL2.0)의 공동연구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국가연구소(NRL2.0) 내 중복 수행 불가)

기존 연구 수행자의		국가연구소(NRL2.0) 신청 및 중복 수행 여부		
현재 자격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	X (예오) 2026년 단계에 진압하는 연구책임자는 신청 및 선정 가능(선정 시, 단계종료시점까지 중복 수행 가능, 기존 연구 단계종료 이후 기존 연구 중단 후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수행	0	
	공동연구원	0	0	
글로벌	연구책임자	0	0	
기초연구실	공동연구원	0	0	
		Х		
글로벌 리더연구		(예오) 2026년 단계에 진입하는 연구책임자는 신청 및 선정 가능(선정 시, 단계종료시점까지 중복 수행 가능, 기존 연구 단계종료 이후 기존 연구 중단 후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수행	0	
701	연구책임자	X	0	
교육부 소관		0	0	
작년 집단연구시업*	공동연구원	(예오1)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은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수행 불가		

^{*}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내 인프라 고도화 유형

예외 적용 시 주의사항

- ▶ 3책5공 적용 예외(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적용 예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부처 사업
- ▶ 기초연구사업 규정 예외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집단연구 1인 1과제 등 예외
 - 단, 국가연구소(NRL2.0)의 공동연구원의 경우 기초연구사업 규정과 관계없이 중복 수행 허용(대학기 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 제외)

【정부R&D 공통사항 적용】

- o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는 참여 제한 기간이 신규과제 신청마감 전일(2025.4.29.)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 과제 신청 가능
- o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 국가연구소(NRL2.0)의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연구소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며 해당 연구책임자로 선정 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가능(2책 5공)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2. 사전 조사, 기획 평가연구 또는 시험 검사 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적용】

- o (기본원칙)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 (과기정통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교육부)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 단, 기존 집단연구지원사업 공동연구원의 경우 국가연구소(NRL2.0) 공 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중복 수행 가능
 - *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은 국가연구소(NRL2.0) 연구 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수행 불가

예외

- ▶ 수행 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최종종료(연차/단계종료 제외)하는 경우
- ※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내 1인 1과제 예외기준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5공)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신규신청 관련) 2025년도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 집 단연구사업(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신규과제 공모에 신 청하였던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도 2025년도 국가연구소 (NRL2.0) 공모에 신청 가능
 - *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신청 및 신청예정인 연구책임자는 중복 신청 불가하나, 공동연구원은 중복 신청 가능(단,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 연구원의 경우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수행 불가)
 - 연구책임자로 동시 선정될 경우 상위사업* 우선 선정
 - * 국가연구소(NRL2.0) > 타 집단연구 > 글로벌 리더연구
-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2025년도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하며,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도 2025년도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국가연구소(NRL2.0) 연구개시일(2025.9.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6.6.30.)에 최종 종료(연차 종료 아님)될 경우 신청 가능

- 단, ① 글로벌 기초연구실 연구책임자 및 ② 2026년 단계에 진입하는 과기정통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및 글로벌 리더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신청 및 선정 가능
- 국가연구소(NRL2.0) 선정 후, 기존 연구책임자는 2026년 단계 종료 시점까지 국가연구소(NRL2.0) 중복 수행 가능하되, 기존 연구 단계 종료 이후는 제재 없이 기존 연구 중단 후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수행
- 교육부 소관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의 경우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수행 불가

3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 연구소 전용공간 지원

- o 국가연구소(NRL2.0)만의 전용공간 지원 등 체계적인 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ㅇ 지속 가능한 독립공간(인적/물적) 필요
 - 연구소의 지속 가능성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공간 집적화 권장
 - * 주관연구책임자(연구소장)실, 참여교수 연구실, 연구기기실, 세미나실 등 연구소 전용공간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책임자(연구소장)에게 공간 사용료 부과 금지

□ 연구 지속성·자율성 보장 및 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의 재직을 보장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 변경 시 허용 사유
 이외는 중단 원칙 적용 (허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변경)
 - ※ 단, 단계평가 시 변경 가능

<<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변경 허용 사유 >>

구분	세부 내용
신분변동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 공직,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의 상근 관리자 직책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천재지변,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인정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1항 1호에 따라 집단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특별평가를통해 연구책임자 변경이 인정된 경우 * 변경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4 신규과제 신청 시 필수 확인사항

- ㅇ 신규과제 신청 전, 신청요강에 명시된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 확인 필수
 -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
 - ※ 신청요강 내 [붙임1]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를 통한 요건사항 최종 확인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①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학기술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제외 (단, 국립대학법인은 지원 대상 포함))
- ② 대학별 최대 3개 이내 신청 여부

2 연구소 자격

- ① KCI 등록(사업 선정시 KCI 등록 필수, 선정 통보 이후 30일 이내 등록 완료)
- ② 교육부 집단연구사업 참여 중인 연구소 여부

③ 연구책임자(연구소장)의 자격

▶ 국가연구소(NRL2.0) 포함 연구책임자로 2과제 이내 수행(2책5공)

4 공동연구원의 자격

▶ 국가연구소(NRL2.0) 공동연구원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5 신청 및 참여제한

-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사항
- ①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3책5공 초과여부
- ②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여부

▶ 기초연구사업 공통사항

- ③ (신규신청)
 - 2025년도 상반기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글로컬랩,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내 인프라 고도화유형 등)의 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 공모 신청 및 신청예정 여부

④ (기존연구 수행자 제한)

- 현재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글로벌 기초연구실 제외)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지원 여부
- 현재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지원 여부
- 현재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의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지원 여부

⑤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 확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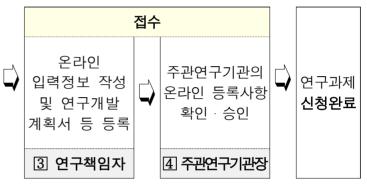
▶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 제출 여부

5 신청방법 및 접수 시 유의사항

□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 연구기관 확인・승인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책임)자가 IRIS 기관등록,			
NRI 가입,	기관총괄담당자		
연구자전환 동의	신청(기관담당자		
및 정보 등록 • 갱신 권한 부여)			
(학력, 경력 등)	기관대표자 등록 등		
① 연구자	② 주관연구기관		



-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1](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및 [별첨(매뉴얼)1-2](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①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u>참여연구자 전원 필수</u>,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②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 ※ 세부내용은 [별첨(매뉴얼)1-3(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
-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00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닌, <00대학교>로 신청요망
- <00대학교>의 기관정보(기관대표자 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 등록 필수
- 승인권한은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산학협력단 과제뿐만 아니라 본교명(00대학교)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
- ※ 현재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만 기관정보(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 등)가 등록되어 있고, 접수마감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00대학교〉로 정보를 변경하여 신청하기가 어려울 경우 〈00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도 신청가능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접수 시 유의사항

- 연구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입력사항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고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만 신청이 유효함
 - * 제출완료 후 수정하려면,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려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반드시 다시 [최종확인] 후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
 - ※ 최종확인 오류가 없어야만 제출버튼 클릭 가능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승인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소속기관에 문의)
- ㅇ 마감시간 이후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반드시 접수가 완료([제출]버튼 클릭)되어야 함

6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5. 4. 15.(화) 09:00 ~ <u>2025. 4. 28.(월) 18:00</u> ※ 신청마감일 : 2025. 4. 28.(월)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5. 4. 15.(화) 09:00 ~ 2025. 4. 30.(수)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2025.4.28.)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규과제 신청이 최종 완료됨
- * 신청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u>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완료 권장</u>
- □ 제출자료(온라인 제출) ★ 온라인 제출 매뉴얼은 접수 전 별도 공지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 연구개 발비 내역, 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등록
 - ㅇ 제출자료(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및 관련 파일) 업로드
 - ①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 연구소 운영, 대학의 지원의지) 1부
 - ② 첨부 목록 1부
 - ③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1부
 - ④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Ⅲ 신규과제 선정평가

1 평가 기본방향

-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혁신
 적 연구성과 및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연구소 선정
- o 대학 내·외부의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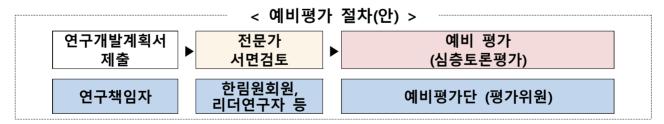
2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 각 분야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연구 주제·역량뿐 만 아니라 대학의 지원 전략과 의지,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
- 예비 평가를 통해 3배수 내외의 연구소를 예비 선정하고, 본 평가를 거쳐
 4개 내외 연구소를 최종 선정
- o 최종 선정된 연구소에 대해 연구 및 연구소 운영 관련 컨설팅 추진

□ 예비평가 방법

- 연구 주제·계획 등 연구개발 수월성·혁신성 중심으로 평가해 3배수 내외의 본 평가 대상 연구소 선정
 - ※ 연구개발 영역(50%) + 연구소 운영 계획 영역(30%) + 대학의 지원 의지(20%)
- o (예비평가 절차) 심충 토론평가로 진행하며, 전문가 서면 검토 사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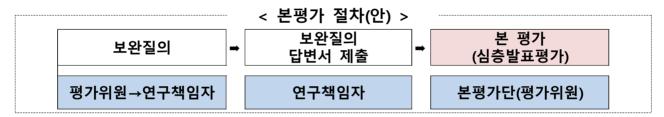


- (전문가 서면 검토) 평가 前, 연구주제의 학문적 가치 등 연구개발의 수월성 검증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를 통한 검토(자문 성격) 실시
-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리더연구(과기정통부) 등의 전·현직 연구책임자 등을 포함해 학문적 수월성을 인정받고 최신 과학기술 트렌드에 밝은 연구자 등
- (평가 위원) 분과별 해당 연구 주제 관련 전문가(10인 내외) 및 정책·조직· 교육 전문가(3인 내외) 등 10~15인* 내외의 예비평가단 구성

- * 평가 대상 과제 수, 연구 분야의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미달 점수 설정) 최고 수준의 연구소 선정을 위해 미달 점수(만점의 70%)를 설정
- * 최종 점수가 동점인 경우 '연구개발', '연구소 운영 계획'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연구소에 우선순위 부여하며, 예비평가 결과 의견을 본평가 시 참고로 활용(예비평가 점수는 본평가에 미반영)

□ 본평가 방법

- 연구소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대학의 지원 의지 위주로 평가하여
 4개 내외의 연구소를 최종 선정
 - ※ 연구개발 영역(30%) + 연구소 운영 계획 영역(40%) + 대학의 지원 의지(30%)
- (본평가 절차) 예비평가 결과 3배수(12개) 내외의 연구소에 대해 하나의 분과에서 검토·평가



- * 온라인 서면검토를 통한 보완질의를, 심층 발표평가 전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고 답변 기회 부여
- (평가 위원) 정책·조직·교육·성과활용(변리사 등) 전문가(10인 내외) 및 해당 연구주제 관련 전문가(25인 내외) 등 35인* 내외의 본평가단 구성
 - * 평가 대상 과제 수, 연구 분야의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미달 점수 설정) 수월성 높은 연구소 선정을 위해 만점의 80% 이상을 득점한 연구소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대상으로 추천
- * 최종 점수가 동점인 경우 '연구소 운영 계획', '대학의 지원의지'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연구소에 우선순위 부여
- □ (분석시스템 활용) '25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리더연구, 중견 연구(유형2) 등 대형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자 연구활동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의 질적 향상 유도
 - * 연구자 연구활동 분석 정보: 논문 연간 피인용 수 추이, 학술지 논문수 추이, 연구 과제 수행 정보, 특허등록 실적 등 다년간의 연구 실적 분석 데이터의 시각화 자료

3 평가 항목

78	ᄀᆸᅠᆸᇧᅕ		배점	
구분	평가항목	1차 예비평가	2차 본평가	
OI 7 711HL	연구의 원천성 및 혁신성			
	연구 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탁월한 성과 도출 가능성	E034	2034	
연구개발	연구성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50점	30점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의 탁월성			
	내·외부 공동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연구소 운영 철학 및 방향성			
	연구소장의 리더십 확보 방안			
	국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연구협력 계획의 구체성		40점	
	연구소 운영을 위한 전문가 및 지원인력 확보 계획의	30점		
연구소 운영	적절성 연구 주제 관련 인력양성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연구소 성과관리 방안의 적절성			
	연구소의 단계별 성장 및 지속가능성 계획의 적정성·타당성			
	인프라 확보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재정 지원 및 인력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인프라 제공 및 투자 계획의 구체성			
대학의 지원의지	학내 규정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의 적절성	20점		
	연구소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 전략		30점	
	연구소 창출 성과의 확보,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타당성			
	연구소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		
	협력 및 홍보 지원의 구체성			
	합계	100점	100점	

4 차별성 검토

구 분	NTIS 차별성 검토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토			
검토 내용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 시) 전문가를 활용한 차별성 검토 실시	신규 연구계획서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최초신규 접수된 연구 계획서와 차별성 검토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 과제와의 차별성 검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검토 방법	NTIS를 통해 유사과제를 검토하며,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또는 한국연구 재단 e-R&D시스템을 통해 유사과제 검토, 검토 결과 같은 주제라도 심화·발전, 다른 방법론 등이 인정되는 과제는 선정·지원		
검토 기준	선정/후보권 과제와 최근 10년(당해연도 포함) 이내 NTIS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차별성 30점 이하 유사과제 간의 차별성 검토 ※ 선정/후보권과 관계없이 실시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 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 으로 최종 확정	※ 검토자(RB/전문가 2인) 모두 '차별성 없음' 이라고 판정한 경우에만 '차별성 없음' 으로 최종 확정		
검토 절차	평가 실시 사전검토 및 평가 대상과제 확정 NTIS 차별성 및 신청 연구계획서 간 차별성 검 사업팀 사업팀 사업팀			

^{*} 차별성 검토 방법 및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에 따라 관리(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1 연구개발비 지급

- ㅇ 연구개발비 구성 항목 : 직접비(인건비 포함) + 간접비
- 간접비 계상식 (직접비 2억원 이상 과제 기준 적용)
- ㅇ 직접비 2억 원 이상 과제의 간접비 지급기준
 - $= 2억 원 \times 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math>\times$ 기관별 간접비율 \times 50%)
 -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간접비 계상대상에서 제외
- *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의미)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별표6」참조)

〈참고〉 간접비 관련 규정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 ⑥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ㅇ 지급시기 : 지원과제 최종 확정 시 협약체결 후 지급
- 지급방법: 한국연구재단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에 따라 재단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괄 지급
 - ※ 그룹별 연구개발비 지급 불가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협약,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개발비 집행 시「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동법「시행령」、「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사용하여야 함
- 사용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o 연구개발비 사용·관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 및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유용 등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 감사, 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 연구개발비 사용 후 통합연구관리시스템에 집행 내역을 적시 등록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법규 및 규정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 할 수 없으며,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적발 시에는 과제 해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화수 조치 적용

<참고>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관련 근거 법령 및 주요 내용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 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 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4.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및 인건비부당회수 등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를 위반한 행위로 본다.

※ 중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유의사항

- (사용용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관련 규정 및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
 - ① (내부거래)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연구자(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국제공동연구 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불가(그 외 출장비 및 회의비 등은 다른 참여연구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가능)
 - ※ 과제에 참여하는 해외연구자는 국내 외부기관 연구자와 동일한 방법(연구비 카드 발급 및 사용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여야 함
 -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해외 연구자가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
 - ② (계약 체결 전 사전협의 및 승인)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전, 전문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받은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야 함 (해외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불승인되어 계약위반이되는 사례 방지)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등을 통해 외국 소재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 므로, 계약서 등에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정산1)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산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간접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편성 시, 해외기관의 간접비 계상과 관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음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 향후 관리사항

1 연차보고서, 단계 및 최종평가 등

□ 연차보고서 제출

- ㅇ 각 연차별 당해연도 종료 1개월 전, 연차보고서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제출
- 단계보고서 제출 시에는 단계보고서로 대체

□ 단계 및 최종평가

구분	단계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일정	(각 단계별) 단계 종	료 2기	배월 전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출		
제출	서류 단계보고서 온라인 제출			최종보고서 온라인 제출			
내용	연구목표 달성 수준 및 수행과정의 적절성, 연구수행 내용 및 과정, 수행결과 및 목표 달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공동연구 활성화 수준, 정도,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 정도 향후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발표평가 성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등에 대하여 토론평기				련 분야 기여 정도,		
절차		① 전문가 평가		② 위원회	심의 또는 결과 확정		③ 통보
	단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		1	(국가연	가 결과 확정 연구소(NRL2.0) 법추진위원회)	소(NRL2.0)	
		연구재단	과기		정통부·교육부		연구재단
결과 활용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조정 또는 계속지원 여부 결정 ※ D등급을 받은 과제 중 '불성실' 판정 과제는 중단 및 제재처분 가능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최종보고서 및 연구 개발성과를 공개 하여야 함			
비고					평가 후 내용을 보인 용 최종보고서 제출	관하여	3개월 이내 제출

^{*} 세부 지표 및 방법 등은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현장컨설팅 실시

- 사업 착수 전, 국가연구소의 명확한 사업 철학 및 개념을 공유하고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및 대학의 적극적 지원 유도
- (시기) 국가연구소(NRL2.0) 최종 선정 직후
- (내용) ① (맞춤형 컨설팅) 평가 결과, 국가연구소의 컨설팅 수요, 연구 계획서에 대한 검토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 내용 설정, ② (공통 컨설팅)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의 목적과 선정된 국가연구소 운영 체계(안), 성과목표 등 간의 정합성, 대학 지원 확약 내용 검토 등
- ※ 현장컨설팅 항목은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 변경 가능

□ 특정 연차별 맞춤형 현장 지원

-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협력, 사업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연구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점검·자문 지원
 - ※ 선정 직후 실시하는 '컨설팅'과는 별개
- (시기) 사업의 2년차, 5년차, 8년차 (단계별 1회)

<국가연구소(NRL2.0) 사업 연차별 컨설팅 및 맞춤형 현장지원>



2 성과 관리

□ 사업 계획 공유

○ 국가대표 연구소로서 책무성 제고와 혁신적이고 우수한 선도 연구소 모델의 확산을 위해 선정 대학은 사업 계획 요약본(5장 내외) 대외 공개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 (공동소유) 과제 참여형태, 성과창출 형태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를 달리할 수 있음
 -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 → 단, 국가연구소(NRL2.0)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연구원의 소속기관은 원칙적으로 성과를 소유할 수 없음
- o (위탁연구)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국제공동연구)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유 원칙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등을 통해 외국 소재 제3자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해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약서 등에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ㅇ (개인명의 연구개발성과 소유)
- 지식재산권 성과(특허 등)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 위반 행위임
-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
- o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등록 시 연구개발 과제 정보 기재 안내)
-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특허 등)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번호,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등

□ 연구성과 등록 의무

- ㅇ 논문, 지식재산권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논문 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 발생 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운영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에 수시 입력

□ 연구개발성과 공개

- ㅇ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여야 함
- 다만,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3개월 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신청 가능
-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연장 요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3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o 「2025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2024.11.)」에 따라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연구과제 수행 포기 요청 시,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통한 연구자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조치 진행

<< 수행포기 신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기준 >>

구 분		세부 내용
신분 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 포함) ※ 연구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불인정
	퇴직	재임용 탈락 및 소속기관의 귀책사유(폐교, 파산 등)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 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입원) 이력 또는 계획이 기관제출용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출산·육아는 관련 휴직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 ※ 수행포기의 사유(불가피성) 및 시점(잔여 연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Ⅵ 기타 사항

1 논문 사사표기 안내

- ㅇ 논문 게재 시, 아래 사사문구 표기 필수 ※ 미표기 시 성과인정 불가
 - ▶ 국문표기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번호).
 -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and MOE) (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 관리 번호).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MOE: MINISTRY OF EDUCATION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2 국내외 파견연구 관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검토단계에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중단 여부 검토
 - ※ 연구개시일에 파견 중인 경우, 협약 직후 지체없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연구책임자가 외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ㅇ 기초연구사업 연구책임자 사이버 연구유리교육 이수 의무화
- 교육운영 지정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이수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 이수기간 : 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교육과정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이공계)
- 교육관련 문의전화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s://alpha-campus.kr/
 - ·교육운영 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www.kird.re.kr)
 - · 교육운영 콜센터 : 1588-5834, e-kird@kird.re.kr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 연구노트 작성 안내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자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성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추후 필요 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 및 성실성 평가의 근거로 연구노트 활용

6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o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알림공간▶공지사항) 참조
-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 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7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 58조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 조치를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과가 확정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함
 -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

8 연구자 연구윤리 의식 강화 및 확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물론 각종 보고서 및 성과를 허위(중복성 포함)로 기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등 조치
 - * 주요 연구수행 실적 작성 시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과제를 누락한 경우 또는 2개 이상 동시 신청한 과제가 동시 선정되었음에도 과제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등 포함
 -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9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 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하기 바람
 -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10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화합물 기탁 안내

○ 연구개발과제로부터 도출된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o 화합물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한국 화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부설 화합물은행, 042-860-7190)에 기탁하여야 함

11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확인

12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안내 사항

- o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http://www.labs.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중앙연구안전지원센터 (042-240-6471)로 문의

13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안내 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의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연구성과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연차별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단순행정, 실험보조 등은 참여불가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수행의 전문성, 활용 필수성 및 대체불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 * 계속과제 동일 적용

14 적용 법령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을 적용함
 -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붙임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아래 신청자격의 적정성 관련 각 항목을 <u>반드시 확인 후 확인 여부를 표기(V)하여 별도 제출</u>
- ◆ 신청자격 및 제한사항 미충족 시, 사전(요건)검토에서 과제 탈락 처리(선정 이후 미충족 사례 발견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기						
=	구 분	확인 내용				
① 주관연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 사업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학기술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제외(단, 국립대학법인은 지원 대상 포함))				
1	된인구 발기관	Check (신청요강) p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자	격여부	② 대학별 최대 3개 이내 신청 여부				
		Check (신청요강) p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① 대학부설연구소는 KCI 등록되어야하며, 사업 선정시 KCI 등록 착수하고 선정 통보 이후 30일 이내 등록 완료				
	2	Check (신청요강) p3. 연구소 요건				
 연구소 자격여부		② 교육부 집단연구사업(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글로 컬랩, 대학중점연구소) 참여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연구소는 신청불가 -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내 인프라 고도화 유형, Core 등은 신청 가능				
		Check (신청요강) p3. 연구소 요건				
③ 연구책임자 (연구소장) 자격여부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소(NRL2.0) 이외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포함)에 연구책임자로 1과제 이내로만 수행하여야 함 (2책5공) ※ 단, 수행 중인 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5.9.1.)을 기준으로 10개월이내(2026.6.30.)에 종료되는 경우는 예외 인정				
		Check (신청요강) p4.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국가연구소(NRL2.0) 1인 1과제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국가연구소(NRL2.0) 내 중복 수행 불가)				
	격여부	Check (신청요강) p4.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5 신청 및 참여 제한	3책5공 초과여부	①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한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의 경우 최대 5개까지 과제 수행이 가능 하나, 연구책임자로는 2개까지만 수행 가능 (2책5공)				
		Check (신청요강) p5.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참여제한 여부	②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국가연구소(NRL2.0) 신청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신청마감 전일(2025.4)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Check (신청요강) p5. 참여제한				
	신규 신청 여부	③ 2025년도 상반기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대학기초연구소 (G-Lamp) 사업, 글로컬랩,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내 인프라 고도화유형 등)의 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 공모 신청 및 신청예정인 연구자는 본 국 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로 신청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구 분			확인 내용	확인 여부
		Check	(신청요강) p6. 신규신청 제한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여부	④ 현재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글로벌 기초연구 실 제외)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본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로 신청과제에 참여 할 수 없음 ※ 참여 중인 집단연구사업이 연구개시일(2025.9.1.) 기준 10개월 이내 (2026.6.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Check	(신청요강) p6.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책임 ※ 현재	로벌 리더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소(NRL2.0) 신청과제 사자로 참여할 수 없음 참여 중인 글로벌 리더연구사업이 <mark>국가연구소(NRL2.0) 연구개시일</mark> .9.1.) 기준 10개월 이내(2026.6.30.)에 최종 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	
		Check	(신청요강) p6.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의 ¹ 소(NRL2.0)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Check	(신청요강) p7. 기존연구 수행자 신청 제한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확약서) 주	관연구개발기관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개발기관 지원 확약사항		Check	(첨부목록) [첨부3.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확약서]	

국가연구소(NRL2.0) FAQ

FAQ 목차

[신청 및 수행 제한 관련]

- ① 현재 타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2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 (NRL2.0)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 ①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상반기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사업에 신청 하였습니다. 국가연구소(NRL2.0)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① 현재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에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핵심)연구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NRL2.0)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①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 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3책5공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①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도 3책 5공의 연구책임자로 포함되나요?

[신청요건 관련]

- ① 국가연구소(NRL2.0) 지원은 대학별로 제한 없이 지원가능한가요?
- 선정 이후, 연구개발계획서의 당초 계획과 달라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선정 후 공동연구원이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연구책임자(소장) 및 공동연구원의 필수 참여율이 있나요?
-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은 꼭 국내대학이어야 하나요?
- 연구책임자는 국내 대학 소속이어야 합니까?
- 신청하려는 연구소의 소장이 반드시 국가연구소(NRL2.0)의 연구책임자이어야 하나요?

[신청서류 관련]

- ④ 연구개발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계획서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 발표평가 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발표해도 되나요?
- '연구활동분석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 ① 국가연구소(NRL2.0)에 신청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분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연구활동분석'을 위한 논문 및 특허정보 등록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연구활동분석'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① '연구활동분석'을 위해 논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연구활동분석'의 논문 그래프의 상세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 ①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중복 입력된 논문이 많습니다. '연구활동분석'을 위해 모두 삭제 해야 하나요?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

-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① 국가연구소(NRL2.0)의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① IRIS 내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입력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신청 및 수행제한

- 현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2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소(NRL2.0)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소(NRL2.0)의 연구책임자는 타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책임자로 1개 과제만 추가 수행 가능합니다. 단,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에 최종종료(연차종료 아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책5공)
 - 위의 제한사항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제한으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동, 참여 연구원 등으로 참여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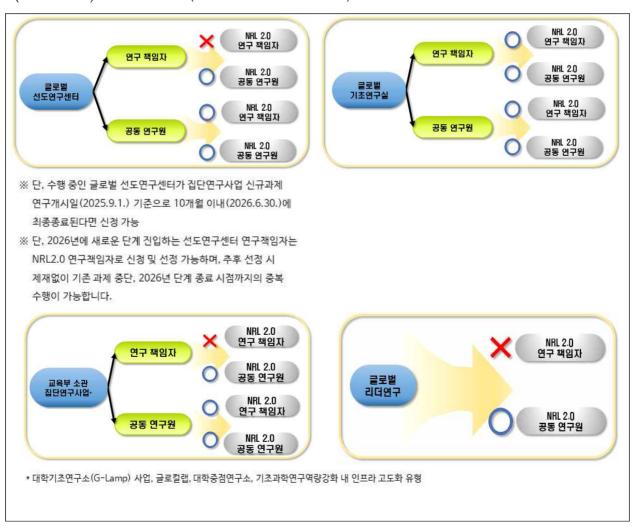
다만, ①글로벌 기초연구실 및 ②2026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및 글로벌 리더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신청 및 선정 가능합니다. 추후 국가연구소(NRL2.0) 선정시 제재없이 기존 과제 중단 후 2026년 단계 종료 시점까지의 중복 수행 가능합니다.

-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중 상반기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사업 에 신청하였습니다. 국가연구소(NRL2.0)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 2025년도 상반기 기초연구 과기정통부 소관 집단연구사업(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더불어,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신청 및 신청예정인 공동연구원은 중복신청 가능합니다. 단,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의 경우 국가연구소(NRL2.0)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수행 불가합니다.
- 현재 기초연구사업 중 집단연구사업(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글로벌 연구실,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기초과 학연구역량강화 내 인프라 고도화 유형)에 연구자(연구책임자 또는 공동(핵심)연구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소(NRL2.0)에 신청이 가능합니까?
- ♪ 기초연구사업 중 과기정통부 소관 집단연구과제(글로벌 선도연구센터, 글로벌

기초연구실),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과제(대학기초연구소(G-Lamp), 글로컬랩, 대학중점연구소,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 내 인프라고도화 유형)의 공동연구원으로는 중복 수행가능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단,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은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수행 불가합니다.

연구책임자로는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집단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 수행 중이시라면 중복 수행불가하나, 예외적으로 ①글로벌 기초연구실 및 ②2026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및 글로벌 리더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신청 및 선정 가능합니다. 추후 국가연구소(NRL2.0) 선정시 제재없이 기존 과제 중단 또는 2026년 단계 종료 시점까지의 중복 수행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수행중인 집단연구지원사업이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 (2026.6.30.)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가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예외) 대학기초연구소(G-lamp) 중점테마연구소 소속 공동연구원은 국가연구소(NRL2.0)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및 수행 불가
- ※ 단, 수행 중인 글로벌 리더연구 과제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2025.9.1.)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6.6.30.)에 최종종료된다면 신청 가능
- ※ 단, 2026년에 새로운 단계 진입하는 선도연구센터 연구책임자는 NRL2.0 연구책임자로 신청 및 선정 가능하며, 추후 선정 시 제재없이 기존 과제 중단, 2026년 단계 종료 시점까지의 중복 수행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구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국가연구소 (NRL2.0) 신규과제 지원이 가능한가요?
- ♪ 개인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1과제,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과제 수행 가능합니다.(단, 국가연구소(NRL2.0)의 공동연구원은 중복수행 가능) 따라서 3책5공 이내일 경우(연구책임자의 경우, 2책5공)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집단연구사업 연구책임자로 중복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수행 중이라면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수행 중인 글로벌 리더연구 과제가 집단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2025.9.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2026.6.30.)에 최종종료(연차 및 단계 종료 아님) 된다면 신청 가능
- 단, 2026년에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는 글로벌 리더연구 연구책임자는 신청 및 선정 가능하며, 추후 선정시 제재없이 기존 과제 중단, 2026년 단계 종료 시점까지의 중복 수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면 3책5공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 ▲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연구사업이 신규과제 연구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것과 별개로 3책5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구사업 집단 연구사업의 예외 기준(신규과제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종료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예외 기준(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기초연구 집단연구사업 1인 1과제」는 "기초연구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으로, 그 예외 기준은 다르며 각각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연구소(NRL2.0)의 연구책임자도 3책 5공의 연구책임자로 포함되나요?
- ▲ 국가연구소(NRL2.0)의 연구책임자(소장)만 연구책임자에 해당되며, 연구책임 자를 포함한 그 외 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은 참여연구원에 해당됩니다.

□ 신청요건

- 국가연구소(NRL2.0) 지원은 대학별로 제한 없이 지원가능한가요?
- ▲ 대학별로 최대 3개의 연구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 이후, 연구개발계획서의 당초 계획과 달라질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 사업 수행 시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단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기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비해 소극적인 방향으로 또는 기존 제출한 연구개 발계획서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변동하는 경우 단계평가 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연구소(NRL2.0) 신규과제 선정 후 공동연구원이 변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 별도의 불이익 없이 사업 수행 시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소(NRL2.0)은 연구자의 보다 자유로운 진·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타 선도연구 센터 유형과 달리 성과목표 관리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구책임자(소장) 및 공동연구원의 필수 참여율이 있나요?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으로, 종전 "참여율" 정의가 삭제되어, 기초 연구사업에서 운영해 온 "최소참여율" 적용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이 준수하여야 할 필수 참여율은 없습니다.
-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은 꼭 국내대학이어야 하나요?

- ♪ 참여연구원의 소속 대학이 꼭 국내대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대학 소속일 경우에도 NRI에 연구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연구책임자는 국내대학 소속이어야 합니다.
 - * 국내대학 소속 외국인의 경우에도 NRI에 연구자 정보를 등록한 후에 과제 참여 가능
- 연구책임자는 국내 대학 소속이어야 합니까?
- 맞습니다. 연구책임자는 국내 대학 소속이어야하며, 신청 마감일 기준 주관연 구개발기관에 재직하셔야합니다.
- 신청하려는 연구소의 소장이 반드시 국가연구소(NRL2.0)의 연구책임자이어야 하나요?
- 맞습니다. 신청 연구소의 소장은 반드시 국가연구소(NRL2.0)의 연구책임자 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는데, 초과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연구개발계획 part1. 연구개발(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 5. 연구 수행 역량) 분량은 30페이지 이내, part2. 국가연구소 운영계획(1. 비전 ~ 7. 실험실 안전 구축방안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은 20페이지 이내, part3. 대학의 지원의지(1.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 4. 연구소 발전 모델의 대학 내·외 확산 전략) 또한,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량에 대한평가 미실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더불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글자 크기나 폰트 등은 자유롭게 하시되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획서 양식을 임의로 삭제 및 추가하실 수 없으며, 계획서 양식 내(part1) 표 서식 중 오른쪽 상단에 '양식A' 또는 '양식B'가붙어있는 경우 임의로 편집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서의「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 하나요?
-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하여야 합니다.

- ❷ 발표평가 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서 발표해도 되나요?
- ▲ 연구계획서와 상이한 연구내용으로 발표자료를 제출/활용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활동분석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 ♪ 기초연구사업 평가의 질적 강화를 위해 국가연구소(NRL2.0)에 적용하는 제도 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 연구자의 연구 활동 추이를 평가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 다음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논문의 연간 피인용 수 추이(국제전문학술지 SCI급, 국내전문학술지 KCI급)
 - ② 연도별 발표 논문 수 추이(생애주기)
 - **3** 연도별 등록특허 실적(최근 10년)
 - 4 연구재단 수행·참여과제 목록(최근 10년)

참고로, 연구활동분석 서비스의 데이터 출처와 유의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을 통해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ㅇ (과제수행 정보)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과제를 기반으로 제공
- ※ 타기관이 지원한 과제정보는 제외되며, 추후 타 기관 지원 정부 과제로 서비스 확대 예정
- o (업적정보)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입력된 연구자 업적정보를 기반으로 제공 ※ 입력이 누락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업적은 제외됨
- (KRI 연계기관) 연구자가 소속기관 업적관리시스템에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 (이외 기관) 연구자가 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직접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 ㅇ 논문의 피인용 수 해석에는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ㅇ 서비스 초기 단계로 과제·논문·특허 등 핵심적 연구활동 및 지표에 대해 한정적으로 제 공되며 추후 보완할 예정임*
- * (예시) 저자 역할별(주저자/공저자) 연간 피인용 수 추이 및 게재 논문 수 추이 제공 등
- ※ 세부 내용은 [붙임 5] 한국연구재단 연구활동분석 소개자료(신청요강 47쪽) 참조
- 국가연구소(NRL2.0)에 신청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분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연구활동분석 서비스에서 분석하는 정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 (KRI)"에 반영된 연구책임자*의 모든 SCI급·KCI급 논문, 최근 10년간의 등록 특허 및 연구재단 수행·참여과제 관련 정보입니다. 연구재단 수행·참여과제 정보는 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정보를 활용하므로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으며, 논문과 특허정보는 2025년 4월 30일(23:59:59)까지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 정보(KRI)"에 업데이트**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등록과 별개로 과제 접수는 IRIS에서 4월 28일(월) 18:00:00까지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하고, 4월 30일 (수) 18:00:00까지 주관연구기관이 승인 완료하여야만 접수완료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책임자 정보만 제공되며, 공동연구원 정보는 미제공
- ** 연구책임자가 KRI에 입력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논문 연간 피인용 횟수 추이, 학술지 논문 수 추이, 연구과제 수행 정보, 특허등록 실적)는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예정
- '연구활동분석'을 위한 논문 및 특허정보 등록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활동분석 서비스 중 성과정보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기관별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 정보(KRI)"와 데이터를 연계하는 유형에 따라 논문 및 특허정보 등록·수정 방법이 다르므로 아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유형별 KRI* 논문·특허 정보 신규 등록(수정, 삭제) 절차

* KRI: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

1. 소속 기관별 KRI 연계 유형 및 유형 확인 방법

구분	정의	KRI에서 확인하는 법	예시기관
유형1	대학의 연구	KRI 좌측 메뉴 > 협정체결기관현황 메뉴	가야대학교,
(대학 연구업적시스템	업적시스템을 KRI와	접속 후 기관명 옆에 🏻 과 😕 표시가	가천대학교,
-KRI 연계 기관)	연계하는 기관	모두 있는 기관	가톨릭관동대학교 등
유형2 (KRIMS 사용 기관)	재단이 제공하는 KRIMS를 사용하여 업적을 관리하는 기관	KRI 좌측 메뉴 > 협정체결기관현황 메뉴 접속 후 기관명 옆에 ^② 표시만 있는 기관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등
유형3 (KRI 직접 입력 기관)	연구자가 직접 KRI에 업적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기관	KRI 좌측 메뉴 > 협정체결기관현황 메뉴 접 속 후 기관명 옆에 아무 표시가 없는 기관 또는 협정체결기관현황 목록에 없는 기관	ICT폴리텍대학, 거제대학교, 건국대학교 등

2. 소속 기관별 논문·특허 정보 신규 등록(수정, 삭제) 절차

○ 유형1(대학 연구업적시스템-KRI 연계 기관)



업데이트

등록·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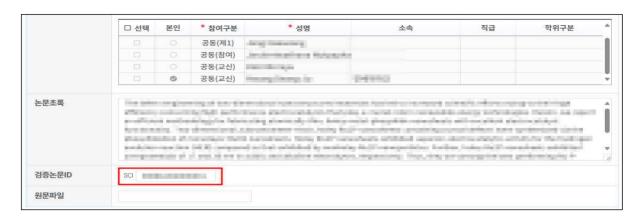
- 3. 유형1(대학 연구업적시스템-KRI 연계 기관) 유의사항
- 신청자 소속기관이 유형1(기관 자체 연구업적시스템 연계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 대학의 업적관리시스템에서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KRI로 연계 필요
 - 대학의 연구업적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의 KRI 반영에 최소 10분~최대 24시간(기관별로 상이)이 **걸리므로**, 기관별 소요 시간을 확인하여 업적정보가 2025. 4. 30.(수)(23:59:59)까지 한국연구재단 "한국 연구자정보(KRI)"에 반영되도록 미리 대학 연구업적시스템 업데이트 필요

연구활동분석

- 평가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연구활동분석'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과 관계없이 정보등록 및 업데이트를 마치신 후 "한국 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연구활동분석 정보를 아래와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자 ID로 한국연구자정보(KRI, www.kri.go.kr) 로그인 후 좌측 메뉴 하단의 '연구활동분석' 클릭 > 화면 상단 [평가자에게 제공되는 화면 보기] 버튼 클릭



- '연구활동분석'을 위해 논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연구활동분석은 KRI에 '국제전문학술지(SCI급)'과 '국내전문학술지(KCI)'로 입력된 논문 중 논문 ID*가 있는 논문만 연간 피인용 수 추이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KRI에 입력된 논문의 ID 입력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제전문학술지(SCI급)'과 '국내전문학술지(KCI)'의 논문 ID가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유형**에 따라 대학 자체업적시스템 또는 KRI에서 ID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활동분석 서비스에서도 ID가 없는 논문만 조회하여 ID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 매뉴얼 참고)
 - * '논문ID'는 SCI, SCOPUS, KCI 논문 DB에서 논문 1개당 부여되는 고윳값으로, 사람의 주민 등록번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분석은 논문의 ID를 통해 논문의 정보를 분석하므로, 논문의 ID가 없는 논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소속기관이 유형1(대학 연구업적시스템-KRI 연계 기관)인 경우 대학 자체업적시스템을 사용하고, 그 이외 기관인 경우 KRI를 통해 직접 수정



- ◎ '연구활동분석'의 논문 그래프의 상세 데이터를 보고 싶습니다.
- 연구활동분석은 연간 피인용 수 추이와 논문 게재 수 추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상세 논문 목록 보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세 논문 목록 보기" 화면에서는 각 논문의 ID 보유 여부 정보를 확인하고 논문 ID를 추가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상세 논문 목록 보기"화면에서 제공되는 논문 목록 및 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오로지 연구자 본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활동분석 서비스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중복 입력된 논문이 많습니다. '연구활동분석'을 위해 모두 삭제해야 하나요?
- ▲ 연구활동분석은 같은 논문 ID를 가지는 논문은 1건으로 산정하여 연간 피인용수와 논문 게재 수를 계산하므로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향후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 나은 분석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복 논문 정보는 삭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
-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및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 연구지원인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수당 계상·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연구과제에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연구활동비 지급은 가능합니다.
- 국가연구소(NRL2.0)의 간접비 계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 사업규모에 따라 '2억원 초과분 계상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circ 간접비 계상식 = 2억원 \times 기관별 간접비율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times 기관별 간접비율 \times 50%)
 -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간접비 계상대상에서 제외
 - ㅇ 또한, 과기정통부 소관 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므로, 간접비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RIS 시스템 내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입력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내부인건비 및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재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와 동일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 학위 과정생만 해당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학생인건비로 계상 가능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집행 불가
ETHE STE	* 연구공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조(정의)의 연구시설장비 정의 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결 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해외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불승인되어 계약위반이 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함) 과제에 참여하는 해외 연구자(공동 또는 참여연구원)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불가(부처 유권해석)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계상·집행 불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연구수당	•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 당초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 보다 초과집행 불가 •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 불가(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기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참조

● 연구지원인력인건비란 무엇인가요?

-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 * 대학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 단, 산학협력단 등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상기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 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은 금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협약하며, 연구과제 수행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 연구개발비 세부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http://moleg.go.kr/main.html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력지원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의2) 대학등의 장이 박사후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3) 제1호나목2)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의2) 학생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다. 성과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다) 홍보전문가 양성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직접비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3) 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시설 • 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라. 연구재료비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마. 위탁연구 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바. 국제공동연구 개발비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사. 연구개발	가)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담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자)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카)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자.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차. 보안수당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및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전문위원(RB: Review Board) 분야

□ 학문단별 RB 분야

학문단	CRB 분야	RB 분야
		대수학/이산수학/정보수학
		해석학
	ᄉᆕ	위상수학/기하학
	수학	응용수학
		확률/이론통계
		응용통계
		입자/장물리/천체물리
		핵물리/플라즈마
		통계물리/생물분리/복합물리
	물리학	광학/원자분자물리
		응집물질물리1(유전체/강상관계)
		응집물질물리2(반도체/자성체)
자연과학		응집물질물리3(나노/초전도체)
		지구/지질과학
	지구과학	대기과학
	시구파의	해양/극지과학
		천문/우주과학
	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화학생물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재료화학
		고분자화학
		전기화학/광화학/융합화학
		세포생물학
ᄱᇄᆉ	기초생명	유전학
		생명정보학
		생화학
생명과학		생리학
		식물학
		미생물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분자생물학 신경생물학 발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임생물학 시랑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이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보생물학 기초의학 전임의학 대생의학 주인의학 재생의학 중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대산내분비의학 내산내분비의학 서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이학 협리/지다의한	학문단	CRB 분야	RB 분야
변생생물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유전자발현 면역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사항생물학 심량자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신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분자세포의학 김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자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분자생물학
부자생명			신경생물학
분자생명 유전자발현 면역학 강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악생물학 식량자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이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발생생물학
면역학			구조생물/생물물리학
감염생물학 노화생물학 암생물학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지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시혈관/혈액/신장의학 실혈관/현액/신장의학		분자생명	유전자발현
보호생물학 암생물학 삼양도 수양도 수양도			면역학
암생물학 식량작물/원예작물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 생리의학 대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대사/내분비의학 내성관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감염생물학
의약학 - 식량자물/원예작물 - 응용생물화학 - 농림생태환경 - 동물자원학 - 수신학 - 식산학 - 식산학 - 식품학 - 영양학 - 생물공학 - 분자세포의학 - 감염의학 - 면역의학 - 해부-생리의학 - 학리의학 - 재생의학 - 종양의학 - 신경의학 - 유전 및 유전체의학 - 정신의학 - 소화기의학 - 대사/내분비의학 - 대사/내분비의학 - 대사/내분비의학 - 대사/내분비의학 - 심혈관/혈액/신장의학 - 호흡기의학 - 호흡기의학 - 호흡기의학 - 호흡기의학 - 호흡기의학 호흡기의학 호흡기의학 호흡기의학 호흡기의학 호흡기의학			노화생물학
응용생물화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신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악리의학 지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성혈관/혈액/신장의학			암생물학
농림생태환경 동물자원학 수의학 수신학 수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학리의학 자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전경의학 전성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선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전형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식량작물/원예작물
기반생명			응용생물화학
기반생명 수의학			농림생태환경
유산학 식품학 영양학 생물공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기초의학 기초의학 지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김혈관/혈액/신장의학			동물자원학
의약학		기반생명	수의학
영양학 생물공학 분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각임의학 지생의학 주양의학 시경의학 사건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시혈관/혈액/신장의학			수산학
생물공학 본자세포의학 감염의학 면역의학 해부·생리의학 악리의학 작심의학 작성의학 증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식품학
변자세포의학			영양학
기초의학			생물공학
미역의학 해부·생리의학 약리의학 자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분자세포의학
기초의학 해부·생리의학 약리의학 자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의약학	기초의학	감염의학
의약학 우리의학 자생의학 종양의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경신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검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면역의학
의약학 의약학 의약학 - 전 및 유전체의학 - 정신의학 - 소화기의학 - 대사/내분비의학 - 심혈관/혈액/신장의학 - 호흡기의학 - 호흡기의학			해부·생리의학
의약학			약리의학
의약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재생의학
의약학 신경의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종양의학
의약학 유전 및 유전체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호흡기의학			
정신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응용의학 호흡기의학			
소화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응용의학 호흡기의학			
대사/내분비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응용의학 호흡기의학			
심혈관/혈액/신장의학 응용의학 호흡기의학		응용의학	
응용의학 호흡기의학			
			병리/진단의학
방사선의학			
생식발달의학			
예방 및 직업환경의학			

학문단	CRB 분야	RB 분야
		외과/응급·중환자 및 주술기의학
		근골격계 및 재활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피부과학
		건강증진의학
		두개안면 생물학
	치의학	두개안면 형태/병태/재생학
		예방보건/재료/응용기초
	한의학	기초한의학
	인의역	응용한의학
		기초생명약학
	약학	응용생명약학
	77	약품화학 및 천연물
하		물리약학 및 약제학
	· 간호학	기초간호 및 임상간호
		건강증진 및 간호시스템
		설계생산
	기계	열공학
		유체공학
		응용역학
		자동화계측
		재료가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설비환경
		지반공학
	건설/교통	수공학
		교통/측량
		토목구조/시공/재료공학
		건축시공재료
	소재	건축구조
		금속재료
		반도체/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나노융복합소재

학문단	CRB 분야	RB 분야
		화학공정
		화공재료공정
	회공	생물공정
		섬유공학
		고분자공학
		전력기술/기기
		계측/제어
		집적회로
	전기/전자	반도체소자
		광소자
		신호처리
		전기/전자 기반 융합
		전자기/통신부품
		통신(원천)
	통신	통신(응용)
		컴퓨터네트워크
ICT·융합연구		통신 기반 융합
	컴퓨터·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처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영상/그래픽스
		데이터베이스/정보처리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반 융합
		의료기기
	비에이 이글으호	바이오센싱 및 나노바이오물질
	바이오·의료융합	바이오소재
		뇌인지과학
	에너지·환경 융합·복합	차세대에너지 융합
		환경
	다학제 융합·복합	산업공학
		교차및초학제융합
		생활과학

붙임5

한국연구재단 연구활동분석 소개

□ 연구활동분석 서비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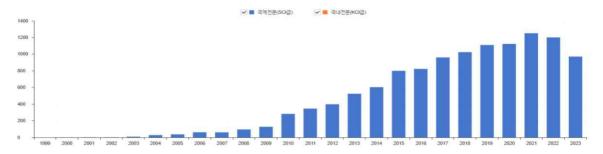
 과제신청자의 생애 전 주기 발표논문 피인용 추이와 최근 10년간 연 구재단 과제수행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여 평가위원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

□ 데이터 출처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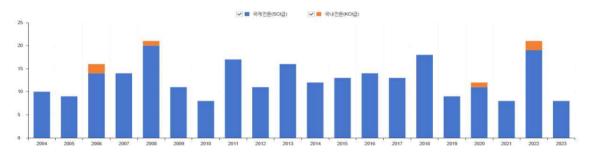
- ㅇ (과제수행 정보)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과제를 기반으로 제공
 - ※ 타 기관이 지원한 과제정보는 제외되며, 추후 타 기관 지원 정부 과제로 서비스 확대 예정
- (업적정보)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입력된 연구자 업적정보 를 기반으로 제공
 - ※ 입력이 누락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업적은 제외됨
 - (KRI 연계기관) 연구자가 소속기관 업적관리시스템에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 (이외 기관) 연구자가 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에 직접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 * KRI 연계 여부는 한국연구자정보(KRI) 홈페이지(www.kri.go.kr)의 왼쪽 메뉴 중 "협정체결 기관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연구업적 등록 및 관리 방법은 연구활동분석 매뉴얼참고
- ㅇ 논문의 피인용수 해석에는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초기 단계로 **과제/논문/특허 등 핵심적 연구활동 및 지표에 대 해 한정적으로 제공**되며 추후 보완할 예정임^{*}
 - * (예시) 저자 역할별(주저자/공저자) 연간 피인용 수 추이 및 게재 논문 수 추이 제공 등

□ 연구활동분석 서비스 내용

- ①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의 연간 피인용 수 추이(생애전주기)
 - 「연간 피인용 수」지표는 연구자가 발표한 모든 논문이 해당 연도에 피인용된 총 수를 의미
- ※ (예시) 2023년 연간 피인용 수는 2023년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이 2023년에 피인용된 총 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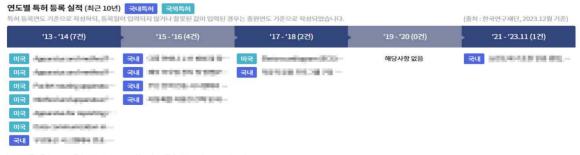
- * 정보출처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 및 논문 DB(SCI, SCOPUS, KCI)
- ②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수 추이(생애 전 주기)



- * 정보출처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
- ③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 수행 및 참여(최근 10년간)
 - 최근 10년간 **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한 책임/참여과제의 과제목록**과 과 제별 사업명, 과제명, 연구 기간, 연구비 등 세부 정보 제공



- * 정보출처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④ 국내외 등록특허 추이(최근 10년간)



* 정보출처 :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자정보(KRI)



붙임6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온라인 입력정보 예시

※ 본 예시는 연구자 편의를 위해 과제 신청 시 온라인상에 직접 입력하는 정보를 담았으며, 업로드 대상 서식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십시오(실제 입력화면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기본정보]

고니데 며	국문	국문 과제명 입력
과제명	영문	영문 과제명 입력

	R&D(필수)공통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3개 이내로 분야 선택 및 가중치* 입력
		6T관련기술코드	단일 분야 선택 및 가중치(100) 입력
연구 분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_적용	3개 이내로 분야 선택 및 가중치* 입력
E or		국가전략기술 분류	단일 분야 선택 및 가중치(100) 입력
	사업단위	기초연구_평기전문분야(RB)	1개의 RB세부분야 선택 및 가중치(100) 입력

* 가중치의 합을 100으로 맞춰야 하며, 1순위 분야의 가중치는 최소 50 이상으로 입력 필요

추가정보	연구개발단계	[기초] 선택
T 713±	연구개발과제성격	[연구개발] 선택

해시신	국문	1개 이상 필수 입력		
핵심어	영문	1개 이상 필수 입력		

※ 핵심어는 국/영문 각각 최소 1개 이상 최대 5개 이내로 작성

[과제요약]

연구기간 선택	전문기관 고정 구성으로 내용만 확인
---------	---------------------

	최종목표내용 (최소 75~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최종목표 및 내용	(최:	연구개발내용 소 300~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J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소 75~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1단계	최종목표내용 (최소 75~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연구개발내용 (최소 300~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단계별 목표 및	2단계	최종목표내용 (최소 75~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내용		연구개발내용 (최소 300~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최종목표내용 (최소 75~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3단계	연구개발내용 (최소 300~최대 4000 bytes)	내용 입력	

[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 정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등록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으로 자동 등록됨			
연구원 구성	[연구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NRI에 등록된 연구자 검색·선택 시 자동 등록됨 또는 엑셀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원 등록			
연구원 구성 (연구책임자 포함)	[인력역할] 책임자* / 참여연구자 / 연구지원인력 / 참여연구자(공동) 중 선택 * 연구책임자는 필수 입력 [참여구분] 내부연구원 / 외부연구원 / 학생 / POST-DOC 중 선택			
연구업적 <i>(연구책임자만 해당)</i>	학력(학위/연도), 경력(근무기관/직위), 주요연구수행실적(완료/수행중/신청중), 대표적 연구실적(논문/저역서/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기타실적) 입력 ※ NRI에 등록한 정보가 있을 경우, 별도 입력 없이 정보 조회 후 선택·저장 가능			
연구원별 연차별 참여기간 설정	참여여부, 학위및전공, 담당역할, 시간선택제 구분, 참여시작/종료일자 등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기관총괄담당자가 기 입력한 대표자 정보 및 연구책임자 정보가 자동 등록됨			

[국제협력]

국제협력 기관 정보	수행기관명(영문), 국가구분, 연구형태*, 참여형태** 등 입력 * 연구형태: 공동연구(국제) 선택 ** 참여형태: 외국연구자유치/연구자해외파견/정보교환/기술연수/국제협약 중 택1			
연구원 구성	수행인력역할, 인력명, 전자우편 등 입력			
	101 112, 2 10, 2 112 0 2 1			
연구비 정보	국외기관이 지불(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 입력 ※ 국제공동연구개발비와 상이함			

[지원기관]

그 외 지원금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기관(지자체, 기업, 주관연구기관 등) 정보 등록
그 외 시원금 부담기관 정보	- 지원기관 역할 선택, 지원기관 역할설명 입력, 지원연차 선택
구립기원 경포 	[기관역할] 지자체기관, 수혜(수요처,참여)기관, 투자처 기관 중 선택

[연구개발비]

	7 🖰	구분 정부지원금		금 부담기관	여차병 저브지워그(청구)		
재원별	十七	경구시전급	현금	현물	연차별 정부지원금(현금)		
연구개발비	1년차	천원	천원	천원	및 (해당 시) 정부외출연금(현금, 현물)		
구성	n년차	천원	천원	천원	정구되돌인급(연급, 연골 <i>)</i> 천원 단위로 입력		
		천원	천원	천원			

연차별 비목별 연구비 구성

연차	세목		현금	현물	소계	미지급인건비 계상기준금액		
		인건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입력		
	직 1년차 접	학생인건비	입력	_	자동계산	_		
1년차		접	접	접	연구시설장비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비	연구재료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_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입력	_	자동계산	_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시 입력	_	자동계산	_
		연구활동비	입력	해당 시 입력 (기술도입비)	자동계산	_
		연구수당	입력	_	자동계산	_
연차	세목		현금	현물	소계	미지급인건비 계상기준금액
4 # +L		간접비	입력	_	자동계산	_
1년차		비목별 연구비	자동계산	_	자동계산	자동계산
		인건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입력
	직	학생인건비	입력	_	자동계산	_
	접	연구시설장비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_
	비	연구재료비	입력	해당 시 입력	자동계산	_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입력	_	자동계산	_
n년차	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시 입력	_	자동계산	_
	접	연구활동비	입력	해당 시 입력 (기술도입비)	자동계산	_
	비	연구수당	입력	_	자동계산	_
	간접비		입력	_	자동계산	_
		비목별 연구비	자동계산	_	자동계산	자동계산

[※] 연차별로 입력(재원별 연구개발비 구성에서 입력하고자 하는 연차를 선택한 후 아래의 비목별 연구비 구성 화면에서 해당 연차의 비목별 연구비 입력)

[연구장비]

연구시설 · 장비 보유현황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을 등록
신규 연구시설·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신규로 구매 또는 구축할 연구시설·장비
구매·구축 계획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과제 선정 후 추가 가능)

[추가항목]

전임형태	1)전임(정규직)과 2)비전임(비정규직) 중 선택					
국제공동연구유형	1) 연구과제 참여 및 인력교류, 2) 초청/방문연구, 3)연구시설장비 활용,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5) 공동연구센터 설치/운영, 6) 기타 중 선택 (최소 1개 유형 이상 선택)					

[첨부파일]

과제 첨부파일	붙임2-1.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붙임2-2. 첨부 목록	신청서식에
	붙임2-3. 연구개시일 기준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따라 작성
	붙임2-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후 업로드
	붙임2-5.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사눼] 비트의 크리웨어 시쳐지겨 저저서 하모벼 웨다/비웨다 어브 서태 중 뭐자
적정성 확인서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자격 적정성 항목별 해당/비해당 여부 선택 후 저장

[최종확인] [최종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오류가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 최종확인 후 오류사항 있으면, 해당 화면으로 돌아가서 오류 수정 후 다시 [최종확인] 후 [제출]

€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문의 전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문의순서

(1차) 연구자 ➡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2차) 주관연구기관 ➡ 한국연구재단에 문의

공고자료 확인

공고문, 신청요강 내용을 숙지



주관연구기관에 먼저 문의

공고내용을 숙자하여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이나 연구관리부서에 문의



한국연구재단에문의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문의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IRIS 운영단 ☎ 1877-2041
 - * IRIS 홈페이지>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 >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사업 관련 : 사업내용 · 지원조건 등
 -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 ☎ (공통번호) (042) 869-6829

a (042) 869–6821

- 평가 관련 : 선정평가 절차·방법·결과 등
 -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 869-내선번호 4자리

구분	국가연구소(NRL2.0) 담당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 약 학 단	공학단	ICT⋅융 합연 구단	
국 가 연 구 소 (NRL2.0)	6557	6538	6058	6542	6566	